

조 정 조 서

사 건

대여금

원 고

피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 담당변호사

조효동

조정장 판사

조 정 위 원

원고

출석

피고 및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 담당변호사 조효동

각 출석

다음과 같이 조정성립

조 정 조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을 지급하되,
가. 30,000,000원은 2024. 3. 15.까지 지급하고,
나. 75,000,000원은 75회 분할하여 2024. 3.부터 2030. 5.까지 매월 말일에 1,000,000
원씩 지급한다.
2. 만일 피고가 제1항 기재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
고 미지급 금원을 일시에 지급하되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
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1항 기재 금원을 모두 지급받으면 즉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 사건의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